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관

제정 1993. 2. 24.
 개정 1993. 9. 17.
 개정 1995. 4. 12.
 개정 1996. 10. 7.
 개정 1998. 5. 15.
 개정 1998. 9. 5.
 개정 1999. 9. 15.
 개정 1999. 10. 19.
 개정 2000. 12. 19.
 개정 2001. 2. 21.
 개정 2002. 5. 28.
 개정 2002. 9. 1.
 개정 2004. 9. 30.
 개정 2005. 4. 1.
 개정 2006. 1. 20.
 개정 2006. 11. 24.
 개정 2008. 1. 2.
 개정 2008. 2. 28.
 개정 2009. 2. 27.
 개정 2011. 12. 27.
 개정 2012. 2. 29.
 개정 2012. 9. 1.
 개정 2016. 10. 1.
 개정 2017. 4. 21.
 개정 2017. 7. 12.
 개정 2018. 8. 9.
 개정 2019. 1.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 이념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국가사회발전과 문화산업분야에 필요한 중견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0. 7.>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청강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 경영한다.

1.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개정 1996. 3. 1., 1998. 5. 15., 2011. 12. 27.>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에 둔다. <개정 1993. 9. 17., 1996. 10. 7., 2017. 4. 21.>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

사회 의결을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20., 2008. 1. 2., 2009. 2. 27., 2017. 4. 21., 2018. 8. 9.>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8. 1. 2.>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매도 · 증여 ·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 · 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신설 2006. 11. 24.>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삭제 <2006. 11. 24.>

제14조 삭제 <2006. 11. 24.>

제15조 삭제 <2006. 11. 24.>

제16조 삭제 <2006. 11. 24.>

제17조 삭제 <2006. 11. 24.>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다.) <개정 1995. 4. 12., 1998. 5. 1., 2001. 1. 11., 2006. 11. 24>

2. 감사 2인 (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06. 11. 24.>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이사장 및 개방이사를 포함한다.) <개정 2006. 11. 24.>

2. 감사 2년(추천감사를 포함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24.>

②임기 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1. 20., 2006. 11. 24.>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관할청의 해임 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에 의한 이 법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한 때

4.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5. 이 법인의 중요 추진 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6.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7. 이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와 감사의 추천 및 선임방법) ①이 법인은 개방이사 및 감사 1인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는 2배수, 감사는 단수 추천해 줄 것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한다. <신설 2006. 11. 24., 개정 2008. 1. 2>

②이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경우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24., 개정 2008. 1. 2>

③이 법인은 제1항에 의거 개방이사 및 감사 1인의 추천을 요청할 시 이 법인 및 대학의 전학이념 구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1. 24.>

제20조의3(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에 둔다. <신설 2008. 1. 2., 개정 2011. 12. 27.>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1. 2.>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제2항제2호의 추천위원은 이 법인 및 대학의 전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이어야 한다. <신설 2008. 1. 2.>

④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08. 1. 2.>

⑤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1. 2.>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1. 1. 11., 2006. 11. 24.>

③개방이사는 이사정수의 4분의 1로 한다. <개정 2006. 11. 24.>

④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1. 1. 11.>

⑤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1. 1. 11.>

⑥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신설 2006. 11. 24.>

⑦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신설 2006. 11. 24. 개정 2008. 1. 2.>

⑧이 법인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6. 11. 24.>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 11. 24.>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사립학교법 제54의2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개정 2006. 1.20.>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6. 11. 24., 2008. 1. 2.>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법인 이사 중에서 상근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0. 8. 9., 2002. 5. 28.>

④상근이사는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 8. 9.>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 한다. <개정 2006. 11. 24.>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06. 11. 24.>

제2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24.>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2.>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이사회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5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11. 24.>

제31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6. 11. 24.>

제31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등) ①평의원회 평의원은 당해 대학의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하고, 평의원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 11. 24.>

②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평의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평의원에 임명 또는 위촉된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임 시 해촉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 11. 24., 개정 2018. 8. 9.>

③기타 이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1. 24.>

제31조의4(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써 그 자격과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 11. 24.>

1. 교원 5인 <개정 2018. 8. 9.>
2. 직원 3인 <개정 2018. 8. 9.>
3. 학생 1인 <개정 2018. 8. 9.>
4. 동문 1인 <개정 2018. 8. 9.>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제31조의5(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신설 2006. 11. 24.>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신설 2006. 11. 24.>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신설 2006. 11. 24.>

제31조의6(소집) 평의원회는 이사장, 대학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06. 11. 24.>

제31조의7(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자문에 한 한다. <신설 2006. 11. 24., 개정 2008. 1. 2.>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2.>
3. 대학의 현장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2.>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2.>

5.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2.>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8. 8. 9.>

제4장 수 익 사 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금전신탁
2. 부동산 임대업 <신설 1999. 10. 19>
3. 영림업 <신설 1999. 10. 19>
4. 교육서비스업 <신설 2008. 2. 28.>
5. 여행알선업 <신설 2008. 2. 28.>
6. 숙박 및 음식업 <신설 2008. 2. 28.>
7. 출판 및 인쇄업<신설 2008. 2. 28.>
8. 기타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항 <신설 2008. 2. 28.>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 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청강학원 사업소를 경영한다.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 33조의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4길 13에 둔다. <개정 1993. 9. 17., 1998. 9. 5., 2017. 4. 21.>

제35조(관리인) ①제 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2. 27., 2017. 4. 21.>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1. 2. 20., 2009. 2. 27., 2017. 4. 21.>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는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신설 2013.3.23.>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 2. 20., 2009. 2. 27., 2017. 4. 21.>

제6장 교 직 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명

- 제39조(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 11. 24., 2008. 1.2., 2016. 10. 1.>
- ②학교의 장 이외의 전문대학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1998. 9. 5., 2002. 5. 28.>
- ③제 1항 내지 제 2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대학교육기관의 총장이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09. 2. 27.>

⑤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학교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기 전 의원면직의 경우 교원직은 유지되는 것으로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 2. 27.>

-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정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2. 5. 28.>

1. 근무기간

가.교수 : 정관 제47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7.>

나.부교수 : 정관 47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2. 9. 1.>

2. 급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 교원업적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개정 2002. 5. 28.>

제39조의 3(신규채용 등) ①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 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 5. 28.>

②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02. 5. 28., 개정 2009. 2. 27>

③전문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 5. 28.>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본 법인의 임·직원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신설 2002. 5. 28., 개정 2017. 4. 21.>

⑤이사장은 전문대학 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 5. 28., 개정 2006. 11. 24., 2009. 2. 27.>

⑥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신설 2002. 5. 28.>

제39조의 4(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년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 <신설 2002. 5. 28.>

①2002년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원은 근무기간이 종료되어(종전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된 경우의 임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교수 : 정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 정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거나 6년

3. 조교수 : 4년 <개정 2012. 9. 1.>

②이사장은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원의 신청에 따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삭제 <2006. 11. 24.>

⑤ 삭제 <2006. 11. 24.>

⑥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⑦이사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대학의 장은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39조의5(특별채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신설 2002. 5. 28.>

1. 사립학교법제5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6. 정관 제39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 공고 후, 갑작스런 교원의 퇴직으로 교과과정 진행이 곤란할 경우

② 삭제 <2008. 2. 28.>

③ 특별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8. 2. 28.>

제39조의6(임명의 제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 2. 28.>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제2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대학교원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7. 4. 21.>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②임면권자는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1. 2. 20., 2009. 2. 27., 2012. 2. 29.>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 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9.>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단, 대학교원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2012. 2. 29.>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직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12. 2. 29.>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삭제 <2019. 1. 30.>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9. 1.30.>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의5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9. 1.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재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 30.>

⑤ 임면권자는 제 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0.>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제47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학의 총장에 대하여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7.>

제47조의 2(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 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8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11. 24>

제4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원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삭제 <개정 2006.11.24., 2009. 2. 27., 2017.4.21.>
3.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정관 제39조의4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2. 5. 28.>

②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임명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제39조의2 제1항 제4호를, 정관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39조의4의제6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28.>

제50조(인사위원회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제51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6. 11. 24., 2009. 2. 27>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5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제1조에 규정한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 10. 7., 2017. 7. 12.>

②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장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신설 2017. 7. 12.>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9조의 2(위원의 기피)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 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9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지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는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 11. 24. >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2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2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4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5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기능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 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6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치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1. 30.>

제67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8. 9.>

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인

제72조(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부참여로 보한다.

②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기획과를 두며, 각 과장은 참사로 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전 문 대 학

제73조(총장 등) ①전문대학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 2. 27.>

②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전문대학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9. 2. 27., 2017. 4. 21.>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2. 27.>

제74조(하부조직) ①전문대학에 기획, 교무학사, 회계, 산학협력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부조직을 둔다. 조직의 개편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8. 9. 5., 2004. 9. 30., 2006. 11. 24., 2008. 1. 2., 2008. 2. 28., 2009. 2. 27., 2012. 9. 1., 2017. 4. 21.>

②총장을 보좌하고, 제1항의 하부조직을 통괄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 9. 5.,

2006. 11. 24., 2009. 2. 27.>

③하부조직을 관장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에 각각 장을 두며, 해당 조직의 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8. 9. 5., 2004. 9. 30., 2006. 11. 24., 2008. 1. 2., 2008. 2. 28., 2009. 2. 27., 2012. 2. 8., 2012. 9. 1., 2017. 4. 21.>

제75조(부속시설) ① 전문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2. 27., 2017. 4. 21.>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 2. 27.>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도서관) ①도서관의 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며, 사서자격증을 수지한 소속 직원을 두어 수서와 열람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4. 21.>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 원

제77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8장 보 칙

제78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고한다. <개정 2002. 5. 28.>

제7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0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정희경	32년 5월 24일	4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80동 1022호
이 사	주춘자	44년 3월 03일	4년	인천시 남구 주안동 80 현대APT 2-503
이 사	김형국	42년 8월 20일	4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익APT 13-1201
이 사	정범모	25년 11월 11일	2년	서울 강동구 상일동 174 상일우성타운 7-102
이 사	이영덕	26년 3월 06일	2년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132-2호
이 사	오재경	19년 6월 02일	2년	서울 종로구 혜화동 22-76
이 사	김덕순	22년 9월 09일	2년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상1리 76-3
감 사	이웅해	42년 2월 11일	2년	서울 강남 청담 134-21 삼익APT 1203호
감 사	계봉혁	25년 9월 25일	1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10동 802호

부 칙

(시 행 일) 이 정관은 199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은 199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은 199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은 199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을 199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을 199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을 199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을 200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을 200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중 설치 학교의 명칭은 1996년3월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은 200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정관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의 규정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의4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2002년 9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채용심사위원에 관한사항) 정관 제39조의3제4항의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 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③(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정관제39조의3제5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은 200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의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의 규정은 200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의 규정은 200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사의 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18조제1호의 이사의 정수에 관한 규정은 2007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의 규정은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의 규정은 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의 규정은 200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의 규정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의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의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의 규정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의 규정은 201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의 규정은 201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정관의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법 인 일 반 직 정 원

총 계	4 명
-----	-----

일반직계	3 명
------	-----

3급(부참여)	1 명
6급(주 사)	1 명
9급(부서기)	1 명

기능직계	1 명
------	-----

10등급계	1 명
-------	-----

운전기사보	1 명
-------	-----

(별표2)

학 교 일 반 직 정 원

총 계 42명(98.5.15개정)(99.9.15개정)(2001.01.11개정)(05.04.01개정)

일반직계 31명(98.5.15개정)(99.9.15개정)(2001.01.11개정)(05.04.01개정)

4급 (참 사) 1명(98.5.15개정)

5급 1명(05.04.01개정)

6급 (주 사) 3명(05.04.01개정)(2012.2.29개정)

7급 (부 주 사) 5명(2001.01.11개정)(05.04.01개정)(2012.2.29개정)

8급 (서 기) 8명(98.5.15개정)(99.9.15개정)(05.04.01개정)(2012.2.29개정)

9급 (부 서 기) 13명(98.5.15개정)(99.9.15개정)(2001.01.11개정)(05.04.01개정)

기술직계 8명

7급 2명

8급(사서보) 2명

9급(사서보) 4명

기능직계 3명(2001.01.11개정)(05.04.01개정)(2012.2.29개정)

8등급계 1명

9등급계 1명(05.04.01개정)

10등급계 1명